

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 외 13인

2. 제안이유

-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산업 트렌드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구미시 관광산업 진흥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, 제67조
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
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
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
 -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와 관광객 유치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고, 관광안내소에 기념품 판매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숙박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,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신고·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. 3. ~ 8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숙박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, 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·등록한 숙박업소를 말한다. 3. ~ 8. (현행과 같음)

- 개정안 제2조는 “숙박시설”의 정의 확장을 위한 개정으로,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업,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, 한옥체험업, 외국인도시민박업이 포함되어 구미시의 휴먼트리 펜션, 춤새마을, 신라불교초전지, 쌍암고택 등이 이 조례상의 숙박시설로 인정됨.

현행	개정안
제6조(관광객 유치 지원 등)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관광객 유치 지원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국내·외 단체관광객을 <u>관내</u>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	1. ----- <u>당일</u> <u>관내 관광지 방문 또는</u> ----- -----
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.	②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5. <u>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</u>

- 개정안 제6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으로, 관내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객뿐만 아니라 당일여행객의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.
- 또한,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「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것으로 타법 저촉사항이 없음.

현행	개정안
제10조(업무) 안내소의 업무는 다	제10조(업무) -----

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의 <u>전시 홍보</u> 5. (생 략) <u>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</u>	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 <u>전시 · 홍보 · 판매</u>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-	---

- 개정안 제10조는 안내소에서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, 추후 구미시 관광기념품 판매소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.

○ 종합 검토 의견,

- 구미시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숙박시설과 관광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, 관광기념품 판매소를 개설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법 저촉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제6조 관광객 유치 등의 조항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지, 관광지 방문 방식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인센티브 신청 등을 시스템화하여 구미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할 것임.